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취지

○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종전 경상북도문예진흥에관한조례로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절차, 방법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을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목 적(조례안 제1조)

○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나.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 (조례안 제2조)

○ **설치권장**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,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

○ **대상건축물** :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,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※ 공동주택(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)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 및 위락시설,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·통신용시설, 의료시설중 병원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

※ 연면적 제외대상 : 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, 변전실, 공조실

다. 미술장식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(조례안 제5조, 제6조)

○ 공통사항 : 건축물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

○ 공동주택 :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

※ 미술장식의 종류

- 회화, 조각, 공예, 사진, 서예 등 조형예술품
- 벽화, 분수대,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

라.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절차 (조례안 제3조, 제4조, 제7조)

○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의무 통보(군수→건축주)

○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 : 착공일로부터 4월 이내 (건축주→군수)

○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: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(군수 → 건축주)

○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: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(군수)

마.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(조례안 제8조 내지 제19조)

○ 구 성 (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)

- 위원장 : 부 군 수
- 위 원 : 당연직 - 주택업무담당과장(종합민원처리과장)
 위촉직 - 건축물 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
- 임 기 : 2년 (1회에 한하여 연임)

○ 기 능

-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 심의
-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
- 미술장식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
- 기타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

※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

3. 조례안 내용 : 붙 임

4. 참고자료

○ 입법예고 결과

· 예고기간 : 2002. 12. 2 ~ 2002. 12. 23(20일간)

· 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
○ 관련자료

· 관련법령 및 조례안 준칙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

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) 군수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·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【별표1】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공동주택(다만,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)
2. 업무시설
3. 숙박시설
4. 판매 및 영업시설
5. 위락시설
6.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, 통신용시설
7. 의료시설 중 병원
8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

제3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

제3조(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) ①군수는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건축주"라 한다)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에게 【별지 제1호 서식】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·심의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)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【별지 제2호 서식】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,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,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)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4장 성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

제8조(설치)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기능)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
2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3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4.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
5.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 중 주택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,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③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2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(위원의 참석범위)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제14조(심의) ①위원회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 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.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6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제17조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8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<table>
<tr><td colspan="9">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8">건 축
개 요</td><td>위 치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건 축 주</td><td colspan="6">성명 :　　주소 :</td></tr>
<tr><td>지역·지구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대지 면적</td><td></td><td>건축면적</td><td></td><td>연 면 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>층　　수</td><td></td><td>최고높이</td><td></td><td>구　　조</td><td></td></tr>
<tr><td>용　　도</td><td></td><td>외장재료</td><td></td><td>건축종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허가일자</td><td></td><td>사용검사
예 정 일</td><td></td><td>총공사비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건 축
설계자</td><td>주　　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사무소명</td><td></td><td>성　　명</td><td></td><td>전　　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미
술
품
개
요</td><td rowspan="2">작품
①</td><td>작 가 명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재료(색상)</td><td></td><td>규　　격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작품
②</td><td>작 가 명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재료(색상)</td><td></td><td>규　　격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작품
③</td><td>작 가 명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재료(색상)</td><td></td><td>규　　격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총설치수</td><td colspan="6">조각　　점, 회화　　점, 기타　　점, 계　　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총 가 액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설치예정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9">위와 같이 신청합니다
2003.　　.　　.
신청인 :　　인

성주군수　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9">첨부서류　1.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3부
2. 작가경력서 사본 1부
3.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 15부(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)</td></tr>
</table>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미술장식품 가격 통지서

제 호

세무서장 귀하 성 주 군 수

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, 성주군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물 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6">건 축
개 요</td><td>위 치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건축주성명</td><td>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지역·지구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건축종별</td><td colspan="2">신축, 증축</td></tr>
<tr><td>대지면적</td><td></td><td>건축면적</td><td></td><td>연 면 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>층 수</td><td></td><td>최고높이</td><td></td><td>구 조</td><td></td></tr>
<tr><td>허가일수</td><td></td><td>사용검사일</td><td></td><td>총공사비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건 축
설계사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사무소명</td><td>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전 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미 술
장식품
개 요</td><td>작 가 명
(전화번호)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규 격
(재료, 색상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작 가 명
(전화번호)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규 격
(재료, 색상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작 가 명
(전화번호)</td><td></td><td>작 품 명</td><td></td><td>규 격
(재료, 색상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작품가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총 설 치 수</td><td colspan="5">조각 점, 회화 점, 기타 점, 계 점</td></tr>
<tr><td>총 가 액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설 치
예정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/table>